

동향

September 2026 No.2

국내외 공익데이터 제도화 논의 동향

박지원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국내외 공익데이터 제도화 논의 동향

박지원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 pjeewon@kisdi.re.kr

요약

- 데이터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확대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넘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 확대
- 공익데이터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이나 제도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국의 법·제도적 환경과 정책 수요에 따라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추진
- 국내에서도 공익데이터 법제화 및 활용체계 구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민간 보유 데이터를 공익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관리·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은 미흡
 - 「국가데이터기본법」 등 인접 제도의 정비와 데이터바우처 사업 등을 통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공 근거·유인체계 및 지속적 확보·관리체계 구축은 초기 단계
- 향후 공익데이터의 개념·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권리 보호를 전제로 데이터의 특성과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차등적 접근·공유 방식과 지속적인 확보·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이 배경

-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가 정책 수립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부상
 - 기존 데이터 정책은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민간기업에 축적*되며 공공 데이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 확대
 - * EU 집행위원회(2020)는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① 대부분의 데이터가 민간에 집중, ②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역량 부족, ③ 조직적·기술적·법적 장애 및 데이터 공유 문화의 부재를 제시하고, 기업-정부(B2G) 데이터 공유가 고립적·단기적 협업에 머물러있음을 지적¹
 -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넘어 민간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에 맞게 공유·연계·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확대
-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16)은 공공데이터 개방 조항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익데이터(données d’intérêt général)’ 절을 두어, 민간 보유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공공데이터와 구분되는 독자적 범주로 법제화
 - 다만 정의 규정 없이 개별 영역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학계 및 정책 논의에서는 ‘민간에 속하나 공공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로 공개·공시가 정당화되는 데이터’로 통용
 - 이처럼 공익데이터는 통일된 단일 개념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수요와 법·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이에 따라 정책 목표와 제도 설계 및 추진 방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
- 최근에는 AI의 사회적 활용 확대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공익데이터의 안정적 확보와 연계를 통해 AI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 확대
 -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권리 보호와 공익적 활용 간 조정, 데이터 품질의 지속적 관리, 공공·민간·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 본 고에서는 주요국의 공익데이터 정책·제도 및 추진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익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European Commission(2020), p.7.

02 국외 동향

I 프랑스

- 「디지털공화국법」(16)에서 공익데이터 개념을 최초로 법제화하고, 공공서비스 수행 및 공익적 목적과 관련된 민간 보유 데이터의 제공·공개 근거 마련
 - 김도승(2023)은 「디지털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의 범위를 ‘공공데이터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데이터’와 ‘공익 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민간 데이터 일부’로 설명
- 공익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데이터 범주와 제공·공개 근거를 규정하고, 데이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제공·제한적 접근 등 차등적인 방식 적용

표 1 |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상 공익데이터 범주

조문	데이터 범주	주요 내용
제17조	① 공공서비스 운영(양허) 데이터	공공서비스 운영자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한 필수 데이터를 공공기관에 제공
제18조	② 공공보조금 협약 데이터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협약 핵심정보를 전자형식으로 재사용이 용이하고 자동처리 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개방형 형식으로 공개
제19조	③ 민간기업 보유 통계 원자료	공공통계 작성을 위해 민간법인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20조, 제21조	④ 행정·사법 판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재식별 위험 검토를 전제로 판결문을 무료 공개
제22조	⑤ 공공도로 제한속도 데이터	국가 제한속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
제23조	⑥ 에너지 생산·소비 데이터	전력 및 가스 배전망 및 송전망 관리자가 에너지 계량 시스템에서 수집한 생산·소비 데이터를 익명·집계 형태의 개방형 형식으로 공개
제24조	⑦ 부동산 거래·가치 신고 데이터	부동산 거래·가치 관련 정보를 연구자, 공공기관, 관련 사업자 등에 제공

자료: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제17~24조 바탕으로 저자 정리

I EU

- 「데이터 거버넌스법」(’22)은 ‘데이터 이타주의*’를 제도화하고, ‘데이터 이타주의 공인기관’(Recognised Data Altruism Organisations)을 통한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마련

* 데이터 이타주의(Data Altruism): 공공서비스 개선,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공익 목적으로 정보 주체 또는 데이터 보유자가 자발적으로(동의기반, 무보상)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

- 데이터 이타주의 공인기관이 정보 주체 및 데이터 보유자와 이용자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동의·철회, 이용목적 제한, 보안 확보 등 정보 주체 및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규정
 - 데이터 이타주의 공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익 목적 법인 ② 비영리성 ③ 다른 사업 활동과 기능적 분리 ④ EC 규정 준수 요건 충족 요구

I 표 2 | 데이터 이타주의 공인기관의 의무

- ① 데이터 이타주의 공인기관(이하 ‘기관’)은 정보 주체 또는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처리 이전에 ㉓ 데이터 이용자의 처리를 허용하는 공익 목적(개인정보의 경우 특정·명시적·정당한 목적 포함), ㉔ 기관이 제3국에서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그 처리 장소와 공익 목적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알려야 함
- ② 정보 주체 또는 데이터 보유자가 허용한 공익 목적 외의 이용 금지,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오해를 일으키는 마케팅 방식 사용 금지
- ③ 기관은 정보 주체의 동의 및 데이터 보유자의 처리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과,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④ 기관은 데이터 이타주의를 통해 수집한 비개인정보의 저장 및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⑤ 기관은 비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전송·접근·이용된 경우 지체없이 데이터 보유자에게 알려야 함
- ⑥ 기관이 제3자의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이 예정된 제3국의 관할권을 명시해야 함

자료: EU 「데이터거버넌스법」제21조 바탕으로 저자 정리

- 또한, 「데이터법」(’23)은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위한 법정 업무 수행을 위해 ‘예외적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다른 수단으로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거나, 비개인정보 중 법률에 명시된 공익을 위한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 등으로 요건 제한

I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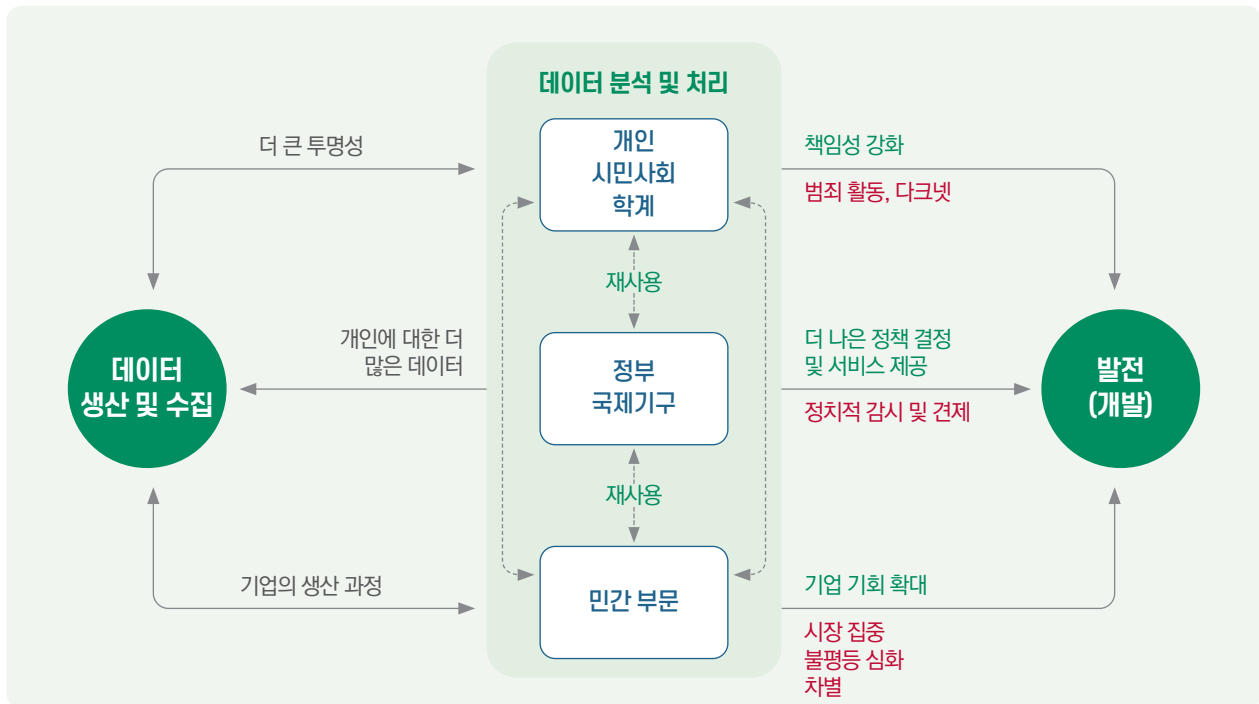
-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16)은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중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 규정
- 이후「포괄적 데이터 전략」(‘21)을 통해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 해결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
-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25.6.13. 각의 결정)에서는 정부나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공유·연계를 확대하는 방향 제시
 - 최신「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26.7.21. 각의 결정)에서는 사업자·업종·업계의 경계를 넘어 데이터를 사회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연계·활용 기반 구체화

I 세계은행

- 「세계개발보고서 2021」은 데이터를 생산 주체가 아닌 수집·활용 의도에 따라 공공목적 데이터(public intent data)와 민간목적 데이터(private intent data)로 구분하는 개념적 틀 제시
 -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된 민간목적 데이터도 공공정책·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으로 재목적화·재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강조
- 특히, 데이터가 부족한 저소득국가에서 공공목적 데이터와 민간목적 데이터의 결합 및 재사용을 통해 기존 데이터 공백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제시
 - [그림1]은 데이터가 3가지 경로(개인·시민사회·학계, 정부·국제기구, 민간 부문)를 통해 분석·활용되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주체가 수집한 데이터가 주체 간 공유·재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
- 한편, 데이터 공유·재사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오용 등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권리 보호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 강조

* World Bank(2021)은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4가지 계층(데이터 인프라 정책, 법률 및 규제 환경, 관련 경제 정책, 제도적 생태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

그림 1 데이터가 발전에 기여하는 3가지 경로



자료: World Bank(2021) Figure 1.3 저자 번역

주: 긍정적 영향은 초록색, 부정적 영향은 빨간색으로 표기

03 국내 동향

-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데이터에 대한 법적 정의와 독립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민간 보유 데이터를 포섭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조항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처리·결합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처리의 허용요건을 정한 것으로 공익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아님
- 다만, 최근 국가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와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이 형성되는 중
 - 국가데이터처는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26.5.27.)
 - 동 법안에는 국가데이터* 총괄·조정 체계 마련, 중요 데이터 지정·관리, 데이터 연계·활용 및 품질 관리,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 등을 포함

* 국가데이터 : 국가 차원에서 국민 수요, 공공가치 창출 등을 위해 연계·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의미

- 그러나 ‘국가데이터’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활용 기반 정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민간 보유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근거 및 유인체계는 향후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
- 이러한 공백을 배경으로 공익데이터의 개념·범위와 법적 지위 명확화, 관리·활용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법제화 논의 제기
 -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세미나」(‘26.2.) 등에서 공공·민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 논의
- 한편, 사업 단위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부로 공익적 활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과기정통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6년「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공개·활용’ 부문을 신설하여 데이터 산출물을 공개·활용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건강·환경·에너지 등 사회현안해결 과제*를 포함하여 공익적 가치 창출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기반 10대 분야 43개 영역

04 소결

- 공익데이터는 통일된 개념이나 제도로 정립되어 있기 보다, 각국의 법·제도적 환경과 정책 수요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
 - 프랑스는 「디지털공화국법」(‘16)을 통해 공익적 목적에 필요한 특정 데이터의 제공·공개 근거를 법제화하고, EU는 데이터 이타주의와 예외적 필요에 따른 민간 데이터 제공 등 자발적 공유와 일정 요건하의 제공을 병행
 - 일본은 민간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이후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전체의 데이터 활용으로 정책 범위 확대
 - 세계은행은 데이터의 수집·활용 목적을 기준으로 공공·민간 목적 데이터를 구분하고, 데이터의 결합 및 재사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제시
- 국내에서도 공익데이터의 법제화 및 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공익데이터 제공·활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음
 - 「국가데이터기본법」등 인접 제도의 정비가 추진 중이나,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의 지정·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민간 보유 데이터 전반의 공익적 활용까지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

-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공개·제공 기업을 지원하는 '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개별 사업 단위 지원에 그쳐 지속적 확보·관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발전하지 못한 상황
- 이에 해외 논의 동향을 참고하여 민간 데이터의 일률적인 개방보다는 공익적 활용 목적과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접근·공유 방식을 마련하고, 공익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권리 보호를 전제로 자발적 제공, 제한적 접근, 법적 제공 의무 등 데이터의 성격과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차등적 활용체계 마련 필요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도승(2023), 「데이터와 공익」, 『공법연구』, 제52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pp.577.

국외 문헌

European Commission(2020), Towards a European Strategy on Business-to-Government Data Sharing for the Public Interest: Final Report Prepared by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Business-to-Government Data Sharin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World Bank(2021), World Development Report 2021: Data for Better Lives, Washington, DC: World Bank.

정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6.2.27.), 「2026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공고」.

국가데이터처(2026.6.12.),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국가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다」, 보도자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026.2.11.), 「국가AI전략위원회,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방향 논의 개시」, 보도자료.

高度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社会推進戦略本部(IT종합전략본부)(2021.6.18.), 「包括的データ戦略」(포괄적 데이터 전략), IT종합전략본부 결정.

デジタル庁(디지털청)(2025.6.13.), 「デジタ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重点計画」(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각의결정.

デジタル庁(디지털청)(2026.7.21.), 「デジタ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重点計画」(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각의결정.

법령 및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2호, 2026.2.27.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의안번호 제2219072호, 2026.5.27. 발의.

「Loi n° 2016-1321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디지털공화국법), JORF n° 0235, 2016.10.8.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平成28年法律第103号, 2016.12.14.

「Regulation (EU) 2022/868 on European Data Governance」(데이터 거버넌스법), OJL 152, 2022.6.3.

「Regulation (EU) 2023/2854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데이터법), OJL 2023/2854, 2023.12.22.

KISDI Perspectives 발간 내역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주요 정책 및 동향을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문의: 노희윤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실, hyooooon@kisdi.re.kr, 043-531-4042)